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권유문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투자자간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계약권유문서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제97조에 의거 사전 교부합니다.

본 계약권유문서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투자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일임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조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 ① 투자일임의 범위
 1.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2.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맞는 합리적 자산운용 방식 선정
 3. 합리적 자산운용 방식에 따른 투자일임자산의 운용, 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가.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투자자 명의 투자일임자산 매매
 - 나. 투자일임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투자설명서 검토 및 확인
 - 다. 기타 투자일임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4.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고
 5. 기타 투자대상 및 운용조건에 대한 투자일임
 6.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않음
- ② 투자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1. 예금·적금·예탁금·예치금(금융투자상품은 제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증권
 2. 집합투자증권
 3.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4. 파생결합증권

제2조 투자일임업무의 수행 기준 및 절차

- ① 계약권유문서 제공 및 투자성향 분석

은행은 계약시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계약권유문서를 제공하며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에 따른 투자자 정보파악 및 투자자와의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위험선호도 등을 고려한 투자성향 분석을 수행합니다.
- ② 투자자의 투자성향 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에 의해 산출된 투자자 투자성향과 같거나 낮은 수준의 위험등급 모델포트폴리오에 투자 가능합니다.
- ③ 자산배분 및 모델포트폴리오 결정
 1.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향별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합니다. 단, 최저위험 유형은 하나의 모델포트폴리오만 마련할 수 있으며 은행정책에 따라 특정 투자자 성향만 제시 가능합니다.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관한 운용방법 간 내용상의 차이 등 세부 사항은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및 약관 별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2.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급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분류'를 기준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하나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상품의 위험등급이 투자자의 위험등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단, 가중 평균한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등급이 투자성향별 위험등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시간경과 등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위험등급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재조정 합니다.
 3. 투자자는 원하는 경우 투자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델포트폴리오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자산군의 비중 또는 특정 종목의 편입)할 수 있으며, 다른 모델포트폴리오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투자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성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④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체결
 1. 투자자는 기타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대해 합리적 제한을 할 수 있고, 은행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투자일임자산 운용시 투자자의 투자성향 한도 내에서는 해당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투자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 ⑤ 투자일임자산의 운용
 1. 은행은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단, 투자자가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2. 은행은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자산을 모델포트폴리오로 운용함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가. 각 모델포트폴리오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행위
 - 나. 모델포트폴리오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군을 편입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거나 최저위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제외
 - 다. 공모로 발행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편입하는 행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간까지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에도 신규투자자금은 투자자에게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 상의 기준에 따라 운용합니다.
 - 가.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초과일로부터 3개월 까지
 - 나.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 개시 시점부터 3개월 까지
 - 다.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만기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 까지
 - 라. 투자자의 요청으로 포트폴리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투자일임자산 중 미운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을 위하여 은행 및 이해관계인(계열회사 등)이 발행하는 증권(ELS, ELB 등), RP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은행과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은 [별지 3]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6. 투자자산의 인출로 운용대상금액이 최소금액 미달 등 운용이 불가할 경우, 모델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지 않고 안전자산(MMF, RP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
-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제4조 투자일임 담당 투자자자산운용사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 내 전문 운용인력이 운용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자 자산운용사에 관한 사항은 [별지 1]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② 투자자는 담당 투자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을 조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5조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① 은행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별지 2]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권유문서

②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변경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또는 은행에 조회 요청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 ① 은행은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은행과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② 투자일임업무 관련 임직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의 공정한 관리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규정」 및 「이해상충의 관리 등에 관한 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7조 은행과 투자자가 부담할 의무 및 책임

- ① 은행의 의무 및 책임
 - 1. 은행은 투자자에 대하여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집니다.
 - 2. 은행은 투자일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 경험, 위험선호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투자자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합니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은행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 3. 담당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 가. 은행은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합니다.
 - 나. 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투자자와의 연락단절,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퇴사, 전출 등 선임된 투자자산운용사가 투자일임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은행은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후 지체없이 동 변경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4. 은행은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자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다.
 - 5.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해 관계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② 투자자의 의무 및 책임
 - 1. 투자자는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은행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은행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8조 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① 은행 및 임직원은 투자일임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 및 임직원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 자산을 은행 또는 임직원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은행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다만,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은행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와 관련된 특정증권 등(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자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은행 또는 임직원,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투자일임자산으로 은행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자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6. 투자일임자산으로 은행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자산으로 은행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8. 투자일임자산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개별 투자일임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자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상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 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라.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득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 마. 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의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바.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9조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의 계산
 -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는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 유형에 따라 투자일임자산의 평균 평가액에 해당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 ※ 일반산식
 - 수수료 = 투자일임자산의 평균 평가액 × 수수료율 × 경과일수 ÷ 기간일수
- ② 분기말 및 (중도)해지시 수수료 차감한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③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시기
 - 1. 매분기 익월 5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의 계좌내 현금성 자산(RP, MMF 등)에서 우선 지급되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투자자의 다른 계좌로 부터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 투자자가 은행과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 방법으로 지급하며, 투자자가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에서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 2. 수수료 인출시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당하는 투자자 계좌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권유문서

내 재산을 투자자와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세금, 집합투자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 통보

- ① 투자실적 및 투자일임자산의 평가

은행은 투자자의 투자일임자산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집합투자증권은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제공하는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시가 또는 은행에서 정한 이 론가로 평가합니다.
 3. 기타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시가기준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가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평가의 목적은 투자일임재산의 가치를 투자자에게 알려드리거나 투자성과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의 결과와 현금화 정도 또는 그 가능 여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성과의 산정 및 통보방법
 1.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평가일 현재 평가금액(체결금액)의 증감률로 합니다. 다만, 입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합니다.
 2. 매매거래 및 투자일임 실적 등이 기재된 투자일임보고서의 통보는 분기 1회 투자자에게 내점수령, 우편, 전자우편 등 투자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은 매 분기 단위로 합니다.
 3. 투자일임보고서의 발송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투자자 및 운용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한 발송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4. 기타사항 : 투자자는 투자일임 자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금액을 직접 조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성립 및 계약기간

- ①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약관 「제3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자격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일정금액 이상을 예탁한 후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② 투자일임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해지 가능(의무 가입기간 3년)하며, 가입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년(가입일 현재 만 15세 이상~29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함)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과세기간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
 3.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4.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5.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농어민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③ 투자자가 의무가입기간 보다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당해 연도 신규 취업 또는 창업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을 할 경우에도 직전연도 소득확인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며, 가입 후 「②-2 및 ②-3(이하 '서민형'이라 한다)」를 충족하더라도 서민형으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해지 및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① 계약의 변경
 1. 은행은 수수료 징수기준 등 약관 및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20일 전에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제도변경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계약의 변경 내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는 투자일임 자산의 운용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계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의 취득·처분에 응합니다.

- ② 계약의 해지
 1. 투자자는 내점을 통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투자자는 계좌의 해지를 은행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3. 은행은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및 기타 투자일임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일임계약은 해지되며, 세제예택본은 추정됩니다.
 5. 계약기간(의무가입기간) 이전 중도해지(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 제외) 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 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정합니다.
 6.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투자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투자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태·질병의 발생, 은행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③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시 해지로 보지 아니하며, 감면세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 신청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2. 은행은 투자자의 중도인출 요청에 따라 납입원금을 인출 시 투자자와 사전에 체결한 약관 등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보수·수수료와 인출일 현재 예상 세금금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는 계좌에서 투자일임자산을 중도에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재산별 인출가능 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투자일임계약 개시시 투자일임재산 형태는 현금만 가능하며 종료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는 현금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투자일임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은행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현상대로 투자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5.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각·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후 계약을 해지합니다.
 6. 투자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해지 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일반 투자일임계좌로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정하여 투자일임계약이 허용되어 일반 투자일임계좌로 전환 및 유지가 불가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해지되며 해지자금은 연결계좌(해지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때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가입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

- ① 은행은 국제청장이 투자자가 가입 당시 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부적격자를 통보하는 경우, 이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통보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서민형 가입대상 여부

: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근로자 및 사업자 여부

: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8월말까지
 3. 농어민의 경우 가입 적격 여부
- ② 부적격 통보시 추가입금 및 계좌이동 등이 제한됩니다.
- ③ 부적격 통보를 받은 투자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제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게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국제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투자일임계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정하여 투자일임계약이 허용되어 일반 투자일임계좌로 전환 및 유지가 불가하므로 최종 부적격 통보시 자동해지되며 해지자금은 연결계좌(해지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때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권유문서

[별지 1]

< 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사항 > 2017-12 현재

근무부서	직위/성명	주요학력 및 경력	자격증	제재내역
투자상품서비스부	차장 전주홍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한화투자증권 고객자산관리(7년) 한화투자증권 Wrap운용(5년)	투자자산운용사	없음
투자상품서비스부	과장 정찬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본부 일반계정운용(4년) KEB하나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팀(4년)	투자자산운용사 CFA	없음

[별지 2]

<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2017-12 현재

1. 임원에 관한 사항

직위	성명	담당업무	취임일	비고
은행장	함영주	총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5.09.01	
상임감사위원	이주형	감사위원회	2017.03.20	
기타비상무이사	곽철승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03.24	
사외이사	오찬석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7.03.16	
사외이사	김남수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2017.04.01	
사외이사	황덕남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7.03.16	
사외이사	정영록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5.09.01	
사외이사	허윤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2015.03.26	

2. 대주주에 관한 사항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하나금융지주	1,071,915,717	100%	

[별지 3]

< 은행과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 2017-12 현재

은행과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이해관계인
하나금융투자	계열회사 (ETF/ETN 주문, RP/파생결합증권 발행 등)

< 투자자 유의사항 >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운용상품 중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여야 하며,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시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계약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공된 모든 과거운용 성과자료 또는 모의운용 성과자료가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과 같은 파생상품 ETF는 복리효과 등에 따라 추구하는 투자목표(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 등)를 달성하지 못 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는 단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중도상환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권유문서 및 부속 별지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대상, 운용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